

의안번호	제 31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11월 18일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319 호
----------	---------

제출연월일 : 2019년 11월 18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북은 민족대표 33인 중 6인과 애국지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향으로 애국 선양 교육사업의 필요성 증대로 역대 대통령 업적 등 기록화 전시와 관련 자료 및 체험시설을 갖춘 대통령 기념관과 연계하여
-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관람객에게 한국 현대사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대한민국의 뿌리인 임시정부 행정수반까지 확대하여 대통령 테마 관광 명소를 조성하려는 안건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산51-4외 2필지(골프장內)
- 사업기간 : 2019 ~ 2022
- 신축규모 : 2,600㎡(부지 16,861㎡) 지상2층/지하1층
- 사 업 비 : 80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50억원)

※ 국비(특별교부세) / 지방비(균특예산 25억 포함)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변경)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1	2,600	8,000,000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산51-4, 51-2, 53-1	2,600	8,000,000	2022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	신축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